

창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3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종친회

可 고 1. B종중

2. C종중

변론 종결 2016. 3. 31.

판결 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종중은 별지 목록 1 내지 8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종중은 별지 목록 9번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6.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D는 E을 시조로 하는 성씨로서 영광파, 후창원파, 창원파, 의성파, 신녕파, 나주파가 있고, 서울·경기, 부산·경남 등의 지역 종친회를 두고 있다.

2) 원고(이하 '원고 종친회'라 한다)는 D 중 창원, 의창, 마산, 진해 등 경남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친목 종친회로서 'F'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1983.6. 21. 회칙을 만들었고 그 이후 'G'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는데, 2000년경 이후 활동이 점차 침체되어 2014년경 전까지 묘지정화사업을 피고들과 함께 한 것 외에는 특별한 활동을 한 바 없다.

3) 피고 B종중 및 C종중(이하 '피고들 종중'이라 한다)은 D의 6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묘지관리 및 종중원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종중인데, '종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1986년경 규약을 제정하고, 1994년경 현재의 피고들 종중 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피고들은 동일한 종중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9번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로 당시 편의상 피고 C종중의 명칭으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별지 목록 1 내지 3번 부동산

가) 창원시 J 임야 1정5단7무보는 1917. 5. 10. 국(國)명의로 사정된 후 1934년경 K 외 2명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가, 1970. 12. 31.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L 및 M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위 J 임야 1정5단7무보는 1973. 12. 22. N 임야 10512㎡, O 임야3041㎡ 및 P 임야

1983㎡로 분할되었다.

다) 위 N 임야 10512㎡, P 임야 1983㎡에 대하여 1985. 3. 22. Q, R, S, T, U, V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P 임야 1983㎡는 1993. 4. 23. P 임야 1669㎡(별지 목록 2번 부동산)와 W 임야 314㎡로 분할되었다.

마) 위 N 임야 10512㎡는 1996. 9. 18. N 임야 10123㎡와 X 임야 389㎡로 분할되었고, N 임야 10123㎡는 1997. 10. 10. N 임야 4370㎡(별지 목록 1번 부동산), Y임야 5446㎡ 및 Z 임야 307㎡(별지 목록 3번 부동산)로 분할되었다.

바) 별지 목록 1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4. 6. 18. 창원지방법원 제28220호, 제28222호로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B중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4, 5번 부동산

가) 창원시 J 임야 1정5단7무보에서 분할된 O 임야 3041㎡는 앞서 본 바와 같이 L,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상태에서 1973. 12. 22. AA 전 3041㎡로 등록 전환되었고, 그 후 1985. 3. 22. Q, R, S, T, U, V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 되었다.

나) 그 후 위 AA 전 3041㎡는 1997. 10. 10. AA 전 2598㎡, AB 전 417㎡(별지목록 5번 부동산) 및 AC 전 26㎡로 분할되었고, AA 전 2598㎡는 2000. 12. 12. AA전 2573㎡(별지 목록 4번 부동산)와 AD 전 25㎡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목록 4, 5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4. 6. 18. 창원지방법원 제28218호로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B중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6번 부동산

가) 창원시 의창구 AE 임야 992m'는 1917. 5. 15. AF가 사정받았고, AE 임야992㎡는 1996. 9. 18. AE 임야 552㎡(별지 목록 6번 부동산) 및 N 임야 440㎡로 분할되었다.

나) 별지 목록 6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4. 6. 18. 창원지방법원 제28223호로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B중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목록 7번 부동산

가) 창원시 의창구 AG 답 3329㎡는 1934. 2. 7. A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AI, AJ, AK, AL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34. 5.30. AM, AN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6. 9. 18. AG 답 1291㎡(별지 목록 7번 부동산) 및 AO 답 2038㎡로 분할되었다.

나) 별지 목록 7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4. 6. 18. 창원지방법원 제28219호로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B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별지 목록 8번 부동산

가) 창원시 의창구 AP 임야 21421㎡는 1934. 2. 15. A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위 법원 접수 제2184호로 AI, AJ, AK, AL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34. 5. 30. AM, AN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0. 12. 31.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해 M, L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4. 3. 12. AQ, T, AR U, Q, R의 공유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AQ이 1985. 9. 30. 사망함에 따라 AQ의 상속인들 중 AS이 위 AP 임야 21421㎡중 AQ의 1/6지분에 관하여 1993. 8.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AS 명의의 1/6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1995. 6. 10. 낙찰자 A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 AP 임야 21421㎡ 중 5/6지분(별지 목록 8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29. 창원지방법원 제39639호로 피고 B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별지 목록 9번 부동산

가) 창원시 AU 답 736평에 관하여 1947. 10. 21. M, AL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9. 4. 2. U, L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창원시 AU 답 2433㎡가 김해시 AV 답 3772㎡(별지 목록 9번 부동산)로 환지되었고, 별지 목록 9번 부동산에 관하여 1986. 5. 20. U 외 4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 목록 9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3.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제10157호로 피고 C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묘 설치 상태 등

별지 목록 1번 부동산에는 D 6세 H, 7세 AW의 분묘가 위치해 있고, 별지 목록 7번 부동산에는 위 H 및 그의 처 AX를 모시는 제실인 AY가 건립되어 있으며, 별지 목록 8번 부동산에는 29세 AZ의, 30세 BA, 31세 BB, 32세 T, BC, V의 분묘가 각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 13, 33, 34호증, 을 제1, 2, 3, 6, 7, 1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U, B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친회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 종친회 소유인데, 원고 종친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종친회의 회원인 K 등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종중재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형식상 피고들 종중을 만들어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2014.10. 26.자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종친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려면, 등기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이전에 그 부동산이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등기 이전부터 종중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간접자료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4.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 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 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기관계, 등기된 부동산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부동산의 관리 상태, 부동산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2005다330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 내지 5, 7, 12, 13, 21 내지 23, 25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U, B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친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 종친회이고 이를 피고들 종중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8 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은 모두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피고들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는 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피고들 종중이 이 사건에서 위 나머지 각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애초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취득원인과 달리 '명의신탁 계약 해지'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 종친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종중이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케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1994. 6. 18.,

1995. 3. 3. 및 1998. 6. 29.이고, 당시 원고 종친회는 'F' 내지 'G' 등의 이름으로 조직을 체계화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원고 종친회의 소유였다면 원고 종친회로서는 바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피고들 종종 명의로 등기를 마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원고 종친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20여 년간 위 피고들 종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3) 원고 종친회의 1994, 1995, 1998년 회칙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다는 취지로 규정(제17조)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원고 종친회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원고 종친회와 같은 단체는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원고 종친회가 제출한 정기총회자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 종종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 피고들 종종은 1993. 12. 21. 및 1994. 11. 30. 종종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들 종종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4) D 6세조 H의 후손들은 창원, 진주 등지에 거주하다가 그 후 일부는 창원 BE 및 의창구 BF 그 일대에 정착하여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D 선조들의 분묘를 설치 내지 관리하며 매년 시제를 지내왔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손들 L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경료하며 위 각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93년경 별지 목록 8번 부동산 중 AQ의 1/6지분에 관하여 AQ의 상속인인 AS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거나 위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어버리자, 위 후손들 사이에서 단체를 체계화시켜 종종재산을 관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들은 규약(을 제3호증)을 명문으로 제정하였으며, 총회를 열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종종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들 종종은 아래 3.나.의 5)항 및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종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등으로 별지 목록 7번 부동산에 AY를 건립하기도 하고, 1994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공과금을 피고들 종종 단체 명의로 납부하여 왔으며, 위 각 부동산에서 묘사를 지내왔다. 이에 의하면 창원 지역에 D 6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의 종종이

성립하여 있었고, 피고들 종중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있다(설령 원고 종친회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 종중 규약의 제정이나 종중 등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무렵에야 이루어지고 피고들 종중의 정확한 명칭이 D종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들 종중을 형식적인 종중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들 종중이 각 규약에 그 명칭(B종중, I종중)을, 구성원 자격(피고 B종중은 구성원 자격을 6세 H의 후손으로, 피고 C종중은 구성원 자격을 31세 BB의 후손으로 규정하고 있다)을 다르게 기재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들 종중은 6세 H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그 구성 종중원들이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위 종중원들이 동일한 종중활동을 해왔던 점, 피고들 종중의 대표자 명의가 2002년 이후 동일한 점, 피고들 종중 명칭 내지 구성원 자격에 관한 정관은 피고들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등기를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어서 위 정관의 기재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중의 존재가 부인되거나 다른 종중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동일한 종중으로 보인다.

5) 원고 종친회는 그의 회계장부라 하여 갑 제22, 23호증의 회계장부 2부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 종친회의 정기총회자료에 첨부하여 있는 수지결산보고내역과 위 회계장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아래 3.나.의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종친회가 위 회계장부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계장부는 원고 종친회가 아닌 피고들 종중의 것으로 보인다. 위 회계장부에 의하면 피고들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종중 앞으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묘소의 벌초 대금 및 공과금 등도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6) 피고들 종중은 2001년 경 별지 목록 7번 부동산에 6세 H 등의 AY를 건립하였다. 피고들 종중은 이러한 AY 건립대금을 L이 2000년 10월 경 피고 B종중의 대표로 서 종중원들에게 AY 건립에 필요한 성금을 기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윤고문을 작성하여 종중원들로부터 기부 받은 대금(만약 피고 B종중이 단지 형식상 만든 종중에 불과 하였다면 내부적으로 종중원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된 윤고문에 L이 본인을 원고종친회 대표가 아니라 피고 B종중의 대표라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등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피고들 종중은 위 AY에서 매해 묘사를 지내고 위 AY에 대한 공과금 및 재산세 등을 매년 납부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등을 현재 원고 종친회의 총무라고 주장하는 T이 소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등기필증 등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등기필증 등의 자료는 T이 피고들중중의 총무로 재임할 당시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T은 피고들 중중의 요구에도 위 자료들을 피고들 중중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한편, T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자료들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령으로 2015. 12. 31.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 등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무렵부터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이러한 자료를 이 사건 소에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원고 종친회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종친회의 피고들 중중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유형, 판사 김민정, 판사 송종선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창원시 외창구	임야 4370㎡.
2.	임야 1669㎡.
3.	임야 307㎡.
4.	전 2573㎡.
5.	전 417㎡.
6.	임야 552㎡.
7.	답 1291㎡
8. 창원시 외창구	임야 21421㎡ 중 (피고 종중 명의의 6분의 5 지분)
9. 김해시	답 3772㎡
"끝"	